# 윤리 강령

작 성 팀	경영본부	문서통제	작성	검토	검토	승인
작 성 자		7d TII	팀원	팀장	본부장	대표이사
작성 일자	2022.03.11	결재				

# ■ 제.개정 이력

제.개정 번호	제.개정일	개정항목	개정 내용 및 사유
0	2022.03.11	-	제정
	·		
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	
	·		

#### 시작에 앞서

본 윤리강령은 주식회사 플라즈맵 (이하, "회사")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준칙으로 적용되며, 회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윤리적 책임을 고려하는 지침입니다. 회사는 회사의 영업활동 및 비영업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, 회사 내부의 조직적 관계, 회사 외부의 협력업체 및 외부 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투명하고 청렴할 것입니다.

본 윤리강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에 기초하는 한편, 일부의 경우 법적인 의무를 넘어섭니다. 본 윤리강령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,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제시합니다.

본 윤리강령은 업무 가이드라인 또는 기타 사내 규칙 등의 매뉴얼에서 추가 설명되거나 집행될 수 있으며, 회사가 속한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되어 지침이나 매뉴얼을 둘 수도 있습니다. 본 윤리강령은 경영본부에서 주관하며, 우리 모두가 볼수 있도록 본사 및 지점에 비치되고 사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.

#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, 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
#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회사 및 회사가 경영권이 있는 모든 국내외 회사 및 조직 그리고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회사의 관계회사 및 협력관계사에게도 본 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해야 합니다.

### 제 3 조 (정의)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: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,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을 말합니다.

#### 주식회사 플라즈맵

- 2. 이해관계자 : 경쟁사, 고객, 공급업체, 주주 등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자. 넓은 의미에서 협력사, 소비자, 종업원, 지역사회, 언론, 시민단체 등이 포함됩니다.
- 3. 유형 및 무형자산 : 여하한 형식의 회사의 자금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, 보급품, 도구, 재고, 자금, 컴퓨터 시스템 및 장비, 컴퓨터 소프트웨어, 컴퓨터 데이터, 차량, 기록 또는 보고서, 기밀 정보,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 또는 자료, 전화, 음성메일 또는 전자메일을 사용한 통신 등도 포함됩니다.
- 4. 협력관계사 : 회사와의 거래 또는 업무관계에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회사/단체 및 그에 속한 개인을 통칭하며, 개인적인 관계(친구, 친척 등)가 있더라도 협력관계사로 간주합니다.
- 5. 공직자 등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한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및 동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된 자를 말합니다.
- 6. 윤리 담당부서 : 윤리규정의 관리를 포함한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본부 내 주식회사 플라즈맵 윤리지원조직을 말합니다.
- 7. 준법 지원부서 : 회사와 임직원의 경영활동에 있어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 지원조직을 말합니다.

#### 제 2 장 임직원의 의식과 태도

#### 제 4 조 (성실한 업무수행)

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업무 수행하여야 합니다. 특히,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주어진 과업을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도 집중도 있게 근무하여야 합니다.

# 제 5 조 (겸직 및 겸임)

- 1.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윤리 담당부서의 승인 없이 다른 경쟁사, 협력관계사 등을 위해 근무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겸직 및 겸임에 따른 보수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- 2. 임원이 정부 기관 또는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특히,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이사회 과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- ①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사의 이사 또는 유한책임사원

- ② 이사 개인 혹은 제 3 자 명의로 회사 사업 영역의 거래 체결
- ③ 이사 개인 혹은 제 3 자 명의로 회사 및 협력관계사와 거래 체결
- 3.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임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반드시 회사의 업무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4. 윤리 담당부서는 '적절한 조치'에 대해 필요할 경우 감사를 수행하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 6 조 (품위유지)

- 1. 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- 2. 모든 임직원은 우리 회사에 찾아오는 스타트업 및 외부 협력업체와의 만남이 있을 경우, 임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만남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, 만남에서 취하는 행위 및 언행이 회사의 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 7 조 (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)

- 1.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적절하게 배당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-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이 손실, 손해, 오용, 절도 또는 태업에 따른 파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.
  - ② 임직원은 회사 자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.
  - ③ 회사 자산은 사업 목적에 한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회사 자산 또는 서비스의 사용은 재무책임상임이사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.
- 2. 회사 및 임직원은 정확한 장부 및 기록 관련법에 따라 회사는 장부 및 기록에 회사 자산의 거래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상세한 방식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. 특히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존중하여야 합니다.
  - ① 허위 기재 및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재는 엄격하게 금지되며, 회사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비공개 채무 또는 자산을 용인하지 아니합니다.
  - ② 대금 지급은 증빙 문서상 기록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.

- ③ 모든 임직원은 재무제표 및 기타 보고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 및 회계관련 통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3.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에게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.
- 4.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회사의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 의무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유효하며,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  - ① (이용자정보의 무권한접근) 이용자의 정보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
  - ② (외부유출) 회사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
    - · 언론기관 관련자에게 유출하는 행위
    - · 블로그, 블라인드 등 다수가 사용하는 외부채널에 유출하는 행위
    - · 가족, 친구, 전 동료 등 외부의 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
  - ③ (내부유출)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내부보안정보를 회사 내부의 권한 없는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
  - ④ (내부자정보 거래)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투자심사 또는 투자검토 과정에서 지득한 내부자정보를 활용하여 자신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사주 거래를 하는 행위
- 5. 상기 4 항 4 호에 따른 취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은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 처분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 8 조 (건전한 기업문화 조성)

모든 임직원은 상하·동료 간에 성적 괴롭힘,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. 또한, 특히,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
- ① (폭행) 물리적 폭력 (위협적 행동 포함)
- ② (폭언) 언어적 폭력
- ③ (성적 괴롭힘) 상대방에게 성적 모멸감을 일으키는 행위
- ④ (차별) 타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
- ⑤ (은폐) 회사 내에서 동료에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

#### 제 9 조 (공정한 업무수행)

- 1. 모든 임직원은 협력사 또는 협력관계사와 거래 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2. 모든 임직원은 협력관계사 및 거래처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는 요구 또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
#### 제 10 조 (이해관계 충돌)

- 1.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운영, 회사의 정당한 사업시도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상충 관계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2. 임직원이 업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, 업무 수행에 있어 임직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이 금지됩니다. 단, 다음은 모든 이해상충 관계를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됩니다.
  - ①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회사나 협력사, 협력관계사,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
  - ②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협력사, 협력관계사와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
  - ③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협력관계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
- 3.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상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이 금지됩니다.
  - ①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
  - ② 회사 정보를 이용한 사적 조언 등의 기회에 협력관계사로부터 본인 또는 제 3 자의 고용, 취업 추천 등을 보장받는 행위
- 4. 임직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나 협력관계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윤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 제 11 조 (금품 및 향응)

- 1.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및 향응·접대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, 불가피하게 금품 및 향응·접대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- ①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합니다.
  - ②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, 윤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윤리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2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·접대 수수가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액수 또는 가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.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윤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.
  - ① 홍보 및 행사 기념품
  - ② 경조금
  - ③ 간소한 수준의 식·음료
- 3.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금품 및 향응·접대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. 특히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, 접대·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4.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가족, 또는 친구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선물, 경조금, 기타 사례, 또는 사업상의 우대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5.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관계사 등과 업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접촉 시에는 팀리더에게 사전 보고하고 일정표에 팀 리더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반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# 제 12 조 (윤리규정 준수)

- 1.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,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담당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.
- 2.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규정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3. 각 팀 리더는 소속 직원과 업무상 관련된 협력관계사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.

4.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합니다.

#### 제 3 장 조직에 대한 책임

#### 제 13 조 (인간위주 경영)

- 1. 회사는 인종, 민족, 성, 신념, 종교, 나이, 장애 또는 성적 선호도에 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.
- 2.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.
- 3. 회사는 최적의 업무 환경 구성을 포함하여 각 임직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.
- 4.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합니다.

#### 제 14 조 (임직원의 안전과 행복)

- 1.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련법령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합니다.
- 2.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상호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
#### 제 4 장 주주에 대한 책임

#### 제 15 조 (기업가치 제고)

1. 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,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합니다.

#### 제 16 조 (주주권익 보호)

1.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,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합니다.

#### 주식회사 플라즈맵

2.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·정확성·완전성·적시성 있는 공시를 합니다

#### 제 5 장 협력관계사와의 관계

# 제 17 조 (상생경영)

- 1.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협력관계사를 선정하고, 동일한 기준으로 그 이행 과정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협력관계사에게 전달합니다.
- 2.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합니다.
- 3. 회사는 협력관계사를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스타트업 성장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합니다.

#### 제 18 조 (협력관계사정보 보호)

- 1. 회사는 협력관계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, 협력관계사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2. 회사는 협력관계사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 6 장 사회에 대한 책임

#### 제 19 조 (법, 규칙 및 규정 등의 준수)

- 1. 회사의 방침은 선량한 "법인 시민"이 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법,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- 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과 규칙
  - ② 사업상 체결한 계약의 조건
  - ③ 그 밖의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의 사회 통념상 윤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관습 및 기준

#### 주식회사 플라즈맵

#### 제 20 조 (경쟁 제한)

- 1. 회사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경쟁 제한법을 준수합니다.
- 2. 회사 또는 모든 임직원은 다른 상대방과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포함한 어떠한 담합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3. 임직원은 경쟁사와 가격책정, 계약조건, 기타 기밀 정보 등 경쟁에 있어 민감한 정보에 관하여 논의해서는 아니 됩니다.

# 제 21 조 (건전한 문화 창달)

- 1.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합니다.
- 2.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·문화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하는 등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합니다

#### 제 22 조 (인간의 존엄성 존중)

- 1.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고객,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, 종교, 성,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
- 2.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의 미성년자 보호,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.

#### 제 23 조 (환경친화적 경영)

1. 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,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합니다.

#### 제 24 조 (사회공헌 활동)

1. 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.

#### 제 25 조 (정치적 중립성 유지)

- 1.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나 회사의 자금, 인력,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개인적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.
- 2. 임직원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실행하는 어떠한 정치적 기부도 금지됩니다.
- 3. 회사는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
# 제 7 장 윤리상담 신고 및 제보자 보호

# 제 26 조 (윤리상담 신고 및 제보자 보호)

- 1. 윤리 담당 부서는 회사 시스템에 윤리 상담을 위한 '열린 문 정책'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2. 윤리 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 상담·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.
  - ① 상담·신고된 사안에 따라 이를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위임하거나 윤리 담당 부서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.
  - ② 상담·신고된 사안이 징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할 수 있고 위법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준법지원조직에 문의하여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
- 3. 회사는 협력관계사 관련 상담·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.
  - ① 접수된 사안의 경중,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 받고 해당 협력관계사 및 상담·신고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  - ② 회사는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,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협력관계사와의 거래 제한,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4. 회사는 상담·신고자 보호 및 상담·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  - ① 상담·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·신고 내용을 보호하며, 상담·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
- ② 상담·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윤리 담당 부서장은 대표이사 및 부대표이사와의 협의를 통해 부서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준법지원조직과 협의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윤리 담당부서 등에 상담·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행위 시도만으로도 징계 심의될 수 있습니다.
- ④ 상담·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그 사실을 상담·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.
- ⑤ 상담·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·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.

윤리 담당부서는 윤리규범 관련 상담·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.

부 칙

#### 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2 년 03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.